

#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

## 1. 관련근거

-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137호('20.12.24.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신설

- 총 2항목

연번	분류	분류번호	제목
1	(의과)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	사-112	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
	(한의과) 자보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	허-2-1	
2	건강보험 제1장 기본진료료	가-8	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중 의과·한의과 협진시 중복(유사)진료 범주

-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

### 나. 변경

- 총 1항목
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수치료가 속한 재활치료료의 위치( '절' ) 변경 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54호, 2020.12.29. 전부개정)
- (기존) [별표] 제15절 재활치료료 → (변경) [별표 2] 제10절 재활치료료

- 변경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즉시 적용